

글로벌 on-line 거래에서의 디지털 商品에 대한 關稅賦課의 모델과 평가

Models of the Tariff Imposition on Digital Goods and Its Appraisal in Global On-line Transactions

최홍섭(Heung-Seob Choi)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허은경(Eun-Kyung Her)

남부대학교 국제조리학과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및 디지털 상품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참고문헌 |
| III. 디지털 상품 관세부과의 이론적 근거 분석 | Abstract |
| IV. 디지털 상품에 관한 관세부과의 모델과 평가 |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s essential as reverse action of delivery or supply of digital goods in global transactions. In order to impose the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in global on-line transactions, the imposition of tariff by tracing the payment process when business transaction is occurring is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tariff imposition system by using the model of the main payment tools in global transactions.

Some model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

- i) a model of withholding taxes at the source by the credit company
- ii) a model of self declaration by the importer
- iii) a model of registering by overseas company
- iv) a model of negotiating after the taxation at the export country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preceding research at the point of view of presenting 4 models and doing appraisal by each model.

It should be done more in depth and various study on the model of the tariff imposition system about the models reviewed at this paper. Systematic and reasonable alternatives which are actually adoptable at the system should also be studied and examined carefully. Because it is required that tariff imposition system on the digital good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at of traditional busines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ness and rightfulness, and especially, in order to get justness for the imposition a tariff on digital goods,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should be predictable and be sure to get the fairness by enhancing the equilibrium,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Key Words : Global on-line Transactions, Digital Goods, Tariff Imposition

I. 서론

Global on-line 거래의 급속한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관세부과 문제이다.

특히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디지털 변환이 가능하여 Global on-line을 통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과세가 누락되어 과세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관세를 부담하던 재화가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별로 과세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Global on-line을 통한 재화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세수입(tax revenue)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Global on-line 거래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과세권의 문제와 같이 조세수입의 국가간 배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관하여 국제무역기구나 국제관세기구 및 국가별로 논의되고 있는 관세부과의 방향과 Global on-line 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기존 선행연구들이 관세부과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이슈 및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쟁점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부과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Global on-line 거래에서의 디지털 상품에 관한 현실적인 관세부과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I. 선행연구 및 디지털 상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Global on-line거래 물품의 관세부과여부에 관한 논문들은 일반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논문,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형래·박영기(2005)¹⁾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네트워크형 화폐를 이용한 관세부과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는 향후 그 비중이 높아질 것

1) 박형래·박영기, "전자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재화의 관세부과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10집 2호, 2005.

이며, B2C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통해 관세부과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전자화폐가 가지는 특성인 익명성 때문에 전자화폐의 사용시점을 포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자화폐의 구입대금 지급시점을 근거로 포착하고, 관세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가정하여 일정액의 관세를 환급하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세영·박영기(2003)²⁾은 전자매체를 통하여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결제방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간주하여 현재의 주된 대금지급결제수단 즉 카드결제방법을 중심으로 관세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부과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편의효과의 수치화, 계량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또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제홍(2003)³⁾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 또는 기업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세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세부과를 국가의 국제수지나 국내산업보호 차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유·무체물 또는 10만원(현재 15만원),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고 결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호진·윤영한(2002)⁴⁾은 디지털 상품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디지털 상품을 재화(Goods)로 보자는 견해, 서비스(Service)로 보자는 견해 및 제3자의 유형으로 보자는 견해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잠정적으로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 물품에 대한 무세화를 통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WTO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에는 지지가 필요하지만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또는 법제화에 대하여는 오프라인에서도 정보기술협정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디지털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는 타당하다고 하였다.

김영춘(2001)⁵⁾은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존의 전통무역과 형평성 및 기존의 조세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관세분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 문제와 오프라인 사이버 무역의 급증에 따른 관세행정의 부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무역에 대한 과세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과세, 국가간 과세정보

2) 김세영·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3) 이제홍,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여부에 관한 논의”,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4) 이호진·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5) 김영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를 활용한 과세,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방안,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 등이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에 두고 있다.

곽근재(2001)⁶⁾는 전자상거래의 전자매달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WTO 결정의 경제적 및 다자간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수량적 중요성을 조사하고,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결정의 경제적·규범적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무관세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전자상거래 무역품에 대한 무관세결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의미는 하나의 특정 배달방식에 대한 특혜적 대우가 다른 배달방식으로부터 무역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는 전자매달방법에 대한 특혜적 대우는 배달 수단에 근거하여 제품간의 구분을 금지하는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관세 전자상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있는 것을 자유화 약속의 제고와 함께, GATS 룰이기 때문에 동 룰의 명료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웅탁·남구관(2001)⁷⁾은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시스템이 전통적 상거래하에서의 관세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관세와 관련되어 수송비의 발생여부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관세동맹과 같이 무관세하에서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 특히 무형재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부문에서의 자원의 소비정도는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송선욱(2001)⁸⁾은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수입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나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체의 반발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분간 무관세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과세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연구하였다.

2. 디지털 상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디지털 상품의 의미

국제간 무역에서 전자적 무체물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포함),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디지털 상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디지털 콘텐츠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도표 1>과 같다.

6) 곽근재,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경제적·규범적 의미”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7) 오웅탁·남구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후생효과”,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8) 송선욱,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도표 1> 디지털 상품의 분류

분류	디지털 상품
디지털 콘텐츠 상품	텍스트, 음성, 영상, 멀티미디어 등의 디지털 저작생산물, 텍스트 파일, 음악파일, 영상 파일, 애니메이션, e-book, 컴퓨터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상품	웹서비스, e-Mail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서함 서비스, 검색서비스, 보안서비스, 전자결제서비스, 온라인 컨설팅서비스, 사이버마케팅서비스, ISP, ASP, CSP, 위성방송서비스, 유무선 방송서비스상품, 유무선 통신서비스 상품

자료: 박문서,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pp.50-51(재정리).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i) 디지털 상품을 서비스 영역으로 볼 것인가, ii) 물리적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iii) 새로운 재화영역으로 구분하여 둘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디지털 상품을 디지털 영역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왜냐하면 이를 물리적 상품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미 체계화된 WTO/GATS의 범주에서 보다 명확하게 단일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물리적 상품의 분류 기준이 이미 HS에서 명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상품의 분류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세분화시킬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며, 아울러 디지털 상품을 HS분류기준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제가 되고 있기에, 디지털 상품을 어떠한 범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9)

<도표 2> 디지털 상품의 유형별 특징

유형	관점	특징 및 문제점
물리적 영역으로 보는 견해	‘전기’ 등의 무형제도 물리적 영역으로서 GATT에서 다루고 있음	- GATS의 영역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에 유리 - 구체적 분류기준을 HS code에 신설
서비스 영역으로 보는 견해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영역의 특성보다 서비스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WTO 다수의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음 -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회원국에 따른 기준이 상이
제3유형으로 보는 견해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속성이 혼합되어 있음	- 컴퓨터로 운영되는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 양 재화중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움 - 새로운 형태의 분류기준이 필요

자료: 이호건·윤영환,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80.

9) 이호건·윤영환,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279.

또한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 대해서도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없어 과세 원칙에도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상품이 디스켓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관세법상의 수입의 정의 및 수입물품, 즉, 관세법 제2조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⁰⁾

2) 디지털 상품의 분류

(1) 디지털 상품 분류에 대한 국가별 동향

국제적으로 전달되는 물리적 상품의 경우, WTO 규범을 따르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 전달되는 상품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¹¹⁾

왜냐하면 디지털 상품을 GATT에 규율되는 재화로 볼 것인지, GATS에서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로 볼 것인지 등의 시각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디지털 상품을 재화(Goods)로 분류하고 GATT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디지털 재화의 전송은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지만 디지털 재화 그 자체는 전송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점에 있어서 상품의 성격이 재화(Goods)와 흡사한 영구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체물인 재화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재화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GATT와 GATS를 비교해 볼 때 디지털 상품을 GATT로 규율하는 것이 자유무역확대에 바람직할 것이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¹²⁾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취급에 관하여 GATT에 명시된 원칙들인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일반적 수량제한 배제 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같은 경우로 분류된다.¹³⁾

EU는 디지털 상품을 서비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재화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로 구분되어야 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GATT가 후자에 대해서는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또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디지털 상품이 전통적인 의미의 유체적 재화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디지털 상품은 재화(Goods)와 서비스의 중

10) 김세영, 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p.177.

11) WTO 규범은 무역에 관한 규제를 재화(Goods), 서비스(Service)의 경우를 GATT와 GATS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WT/GC/16

13) WT/GC/W/253

14) WT/GC/W/306

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양자중 어떤 분야로 분류하든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접근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상을 정리하면 디지털 상품의 전송을 규율하는 규범은 i) 미국이 주장하는 GATT 규칙의 선택, ii) EU가 주장하는 GATS의 규칙 선택, iii) 미국과 EU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선택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법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인 방안으로서의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상품의 분류

Global on-line market은 기존의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통관절차 및 관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Global on-line 거래 유형은 <도표 3>에서와 같이 동일한 재화라 할지라도 물리적, 디지털적으로 구분되고, 또한 전송도 물리적 전송, 디지털 전송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¹⁶⁾

<도표 3> Global on-line 거래물품 통관의 구분

구분	상품의 유형
디지털 상품→물리적 운송(물리적 상품)	서적, 잡지, 의류, 전자제품, 일용잡화, 화장품, CD, DVD, 음반
전자적 주문→전자적 전송(디지털 상품)	e-book,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MP3), 정보 및 잡지
물리적 전송 상품→전자적 전송 상품 전자적 전송 상품→물리적 전송 상품	CD, DVD, 음악, 콘텐츠, 제품, 전자서적, 정보재, 게임S/W, 서적, 논문, 자료
사이트 직접 주문→판매(디지털 서비스재)	웹호스팅, 도메인 네임, 예약(호텔/공연/항공 등), 해외주식 정보서비스 이용, 외국사이트 회원 가입

자료 : 연구자 작성

따라서 CD, MP3, 서적 등의 물품은 i) 기존의 무역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ii) 전자적 주문과 기존의 운송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 iii) 전자적 주문과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분류 코드를 마련해야만 관세의 공정성이 유지

15) WT/GC/W/247

16)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한 무형 제품 수입의 경우 주요국과 그리고 미국 및 국제기구에서 무관세화하기로 잠정 결정한 방침을 따르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한 유형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디지털 상품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택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Global on-line 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Global on-line 거래 이외의 방법 즉, 기존의 수입통관 절차와 같다.

Ⅲ. 디지털 상품 관세부과의 이론적 근거 분석

1. 관세부과에 관한 국가별 논의 동향

WTO(1988)는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¹⁷⁾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이러한 결정이 조세수입과 재정정책에 미칠 엄청난 과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무관세 관행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법제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WTO는 무관세의 영구화를 관철하려는 미국과 제4차 각료회의 시까지만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려는 여타국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결론이 유보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각료회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서 관세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과세차별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¹⁹⁾

미국정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11일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기본 틀” 초안을 발표하였고, 1997년 7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⁰⁾ 이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한 미국정부도 이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17)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18)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한국조세 연구원, 1999.12, p.36.

19) 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재정포럼」, 2004.4, p.51.

20) 신승남,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논란,”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34호,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pp.109-141.

의 주도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²¹⁾ 미국은 인터넷 거래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i) 상거래를 왜곡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특히 어떠한 과세시스템이라도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거래 지역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ii) 모든 과세시스템은 간단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 iii) 과세시스템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의 현행 과세구조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모든 과세시스템은 인터넷의 특성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잠재적인 익명성, 소규모의 다중거래능력,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인 위치 파악의 난이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²²⁾ 등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자유무역시대에 대한 국제회의가 EU를 포함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과 동유럽국들이 참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옵저버(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여, 1997년 7월 8일 ‘본(Bonn) 선언’²³⁾을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본 선언은 인터넷 규제의 민간 자율 주도 추진, 정부역할 제한, 새로운 종류의 세금 부과금지, 암호프로그램 수출 자유화를 위한 노력과 각국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의 탈국가성 인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7년 12월 미·EU 정상회담시 전자상거래의 세제와 관련하여 합의된 2대 원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 등이다.²⁴⁾ 그리고 EU 역내에서는 전자적으로 판매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어떠한 전자적 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⁵⁾ 그러나 EU는 과세지불유예는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⁶⁾

또한 인도, 파키스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등 7개국은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의 공식합의에 거부 입장을 보인 것처럼 미국의 무관세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자상거래 육성보다 세금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를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추적하고 사이버 공간의 탈세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주도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고 있다.

2. 관세부과 관련 경제적 및 공간적 타당성 검토

전통적 거래방식에 의한 재화를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한 무형재의 거래로 전환하여 거래할 경우

21) 송선욱,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2, pp.109-141.

22)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http://www.whitehouse.gov>. 25 Nov. 1997).

23) European Commission, “Global Information Networks : Ministerial Declaration,”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at Bonn*, July, 1997, pp.6-8.

24)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8. 19.

25) http://www.kita.net/tri/month_viv.jsp?no=1701, 23 Oct., 2003.

26) 윤창인,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38호, 법무부, 2001. 4, p.124.

전통적 상거래에 비하여 관세와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한 물품전송으로 수송부문에서 수송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무역창출의 경우 후생을 증가시키고, 무역전환의 경우,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²⁷⁾ 이처럼 관세와 관련되어 수송비의 발생여부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관세동맹과 같이 무관세하에서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Global on-line 거래, 특히 무형재의 on-line 거래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부문에서의 자원의 소비정도는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⁸⁾

〈도표 4〉 관세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관세수입 증대 및 관세누수방지 효과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정보형태의 온라인 거래 제도에 대한 관세 수입 감소 방지 및 관세수입 증대
		·형평성 제고 효과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관세 취급의 형평성 제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 보호 효과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확충 및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보호
	부정적 효과	·행정비용 및 사회적 비용 발생효과	·관세당국의 행정업무 과부하 발생 ·관세당국의 징수비용과 관리비용 증가 ·소비외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후생 감소	·전자상거래 무관세 효과 상쇄로 인한 소비자 해당항유 이익의 감소

자료: 김세영·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p.165.

이 외에도 Global on-line 거래에 의한 유형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 따라 그 물품이 외국물품인가 혹은 외국의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품인가 등의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내국사업장에서 이루어지냐 또는 외국사업장에서 이루어지냐의 구분 초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수출이나 수입이나 또는 국내거래인가로 명확하게 정의되며, 아울러 관세부과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표현하며, 여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²⁹⁾ Global on-line 거래 사업장이 사

27) Deng-Shing Huang, "Transport Cost and the Welfare Effect of Customs Un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Discussion Paper No. 9604. February 1996.

28) 오웅탁·남구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후생효과”,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2.(한국관세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sc.org>, 20 Nov., 2003)

29)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무소 영업소 등 사업의 물리적 실체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실체를 갖지 않고, 법상 국내 사업장으로 파악되지 않는 광고, 선적,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장소³⁰⁾만을 갖거나, 이러한 장소조차 갖지 아니한 채 국내시장을 상대로 Global on-line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행세법에서는 고정사업장을 물리적인 실체를 수반하는 장소이므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lobal on-line 거래의 경우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보충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버의 존재이다. 이는 기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상점, 지점 등의 역할을 서버 혹은 이를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고정사업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기능을 갖춘 물리적 설비이고³¹⁾ 또 하나는 소정의 기능을 하는 인적 설비 즉, 종속적 대리인³²⁾이다. 만일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관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연결할 것인가이다. 이는 사업자 혹은 인터넷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서버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관세부과에 따른 부문별 쟁점 연구

1) 관세부과 여부

무체물에 관한 국제거래에서의 관세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가장 선행하는 문제는 이러한 무체물의 Global on-line 거래에 대하여 관세나 내국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WTO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차기 각료회의 때까지 전자전송에 대하여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Global on-line 거래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³³⁾ 이는 수출국 입장에 놓여 있는 주요 선진국과 수입국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이 아직도 여전히 큰 입장차이를 보여주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무관세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에 있다.

30) 법인세법 제94조 4항.

31)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32)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33) 46. We take note of the reports from the General Council and subsidiary bodies on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the examination of issues under the Work Programme is not yet complete. We agree to reinvigorate that work, including the development-related issues under the Work Programme and discussions on the trade treatment, inter alia, of electronically delivered software. We agree to maintain the cur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Work Programme. We declare that 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our next Session.(WT/MIN(05)/DEC 22 December 2005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2) 과세기법

(1) 과세관할권 : 통관과 분배

WTO에서 정한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 분배기준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간접세율이 다른 경우에도 대외경쟁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거래도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물리적인 국제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원칙과 동일하게 Global on-line 거래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과세권 귀속에 있어서는 서버의 소재지 기준, 도메인 네임별 호스트가 위치한 곳, 전자상거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각 방안들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절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세권 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거주지국에 위치한 소비자 서버로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비자의 거주지국에 위치한 소비자 서버로 규정한다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2) 과세시점

Global on-line 거래는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기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Global on-line 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는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해당산업의 보호 및 관세누수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Global on-line 거래 발생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은 확대일로에 있는 전자상거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Global on-line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방법은 원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체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과 지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다운로드 되는 시점에서 과세근거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과세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운로드 중 통신상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몇 회든지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다운로드를 포기하고 지불을 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흐름을 추적하여 관세근거를 포착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Global on-line 거래에 있어서는 무체물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금지불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것이 효율성

34) 김광운·곽광규, “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2003.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체물의 Global on-line 거래에 있어서도 지불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방안은 효율적일 것이다.

(3) 과세수단

동일 재화의 물품이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 대하여 관세부과 유무에 대한 논의가 WTO 및 여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 등의 주요 선진 수출국과의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국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방안을 살펴볼 때 OECD가 제시한 과세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OECD는 Global on-line 거래에 있어서 조세원칙을 확립하고 그 원칙에 근거한 과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로서는 수입자 신고 모델, 국외사업자 신고 모델, 수입지 과세후 양도 모델, 금융기관(카드회사) 원천징수 모델 등이 있다.

3) 유해매체 등의 인터넷 밀수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음란물 같은 유해매체 성격의 무체물 거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무체물 거래의 특성상, 음란물 거래의 경우는 제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체물의 수입도 물리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 적용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해매체를 차단시키는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³⁵⁾

IV. 디지털 상품에 관한 관세부과의 모델과 평가

1. 디지털 상품의 관세부과에 관한 제도적 정립

Global on-line 거래에서의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국가가 무과세화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관세화 한다고 해도 실제로 물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의 통관에 대한 아무

35)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조항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는데, Global on-line 거래를 통한 유해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전송의 경우도 현행의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그 법적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런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무채물에 대한 국제간 거래의 통계자료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무채물도 재화라고 규정되고 있으면서도 Global on-line 거래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세관에서의 문제가 아닌 재정부 등의 외국환관리 측면에서 통제 및 관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Global on-line 상에서의 국제결제 현황을 파악하면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Global on-line 거래에 의해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결제금액의 파다에 구분됨이 없이 부과되어야 하는 관세부과의 모델정립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거래정보 확보방안으로서 사이버무역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하여금 전자무역의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필수적으로 사이트 식별번호(site identifier)를 부여하여 사이버 무역 주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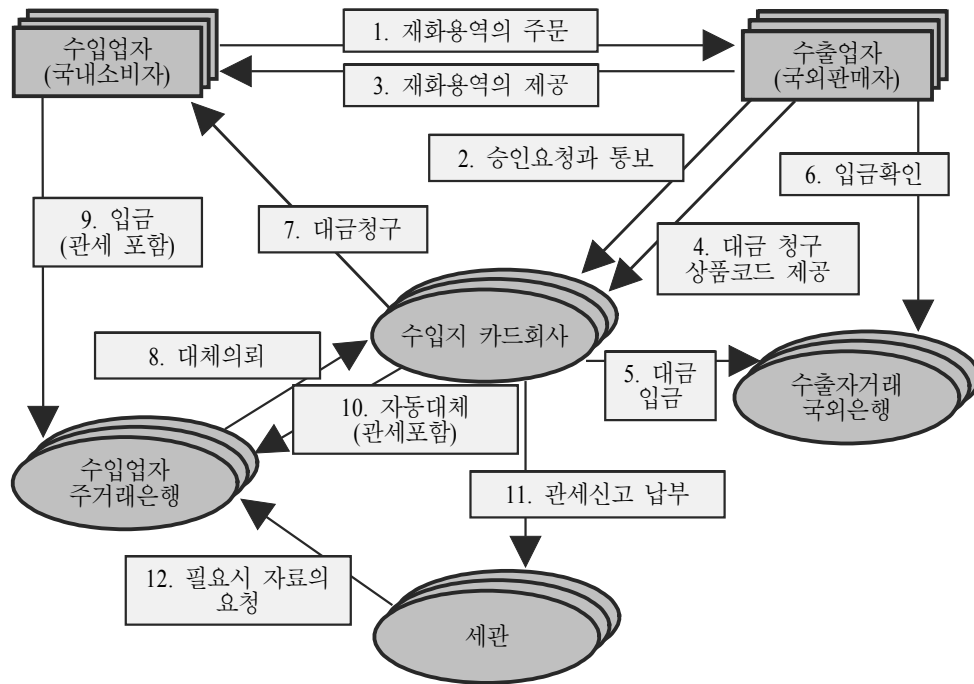
셋째, 자율적 납세신고 증진방안이다. 즉,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소비자가 자국의 세무당국에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한다.

2. 관세부과를 위한 제도적 모델 탐색

1) 신용카드사에 의한 원천징수 모델

<도표 5>는 전자전송물의 무역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로 신용카드회사가 대리납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세를 징수, 납부하는 방식의 관세징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제도하에서 징수의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래 납세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세채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 시간, 인력의 부담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리징수의무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징수의무자의 희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카드회사에게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이들의 반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대안으로 대리납부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 등의 유인을 통해 사회적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징세협조에 대한 보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표 5〉 신용카드회사에 의한 원천징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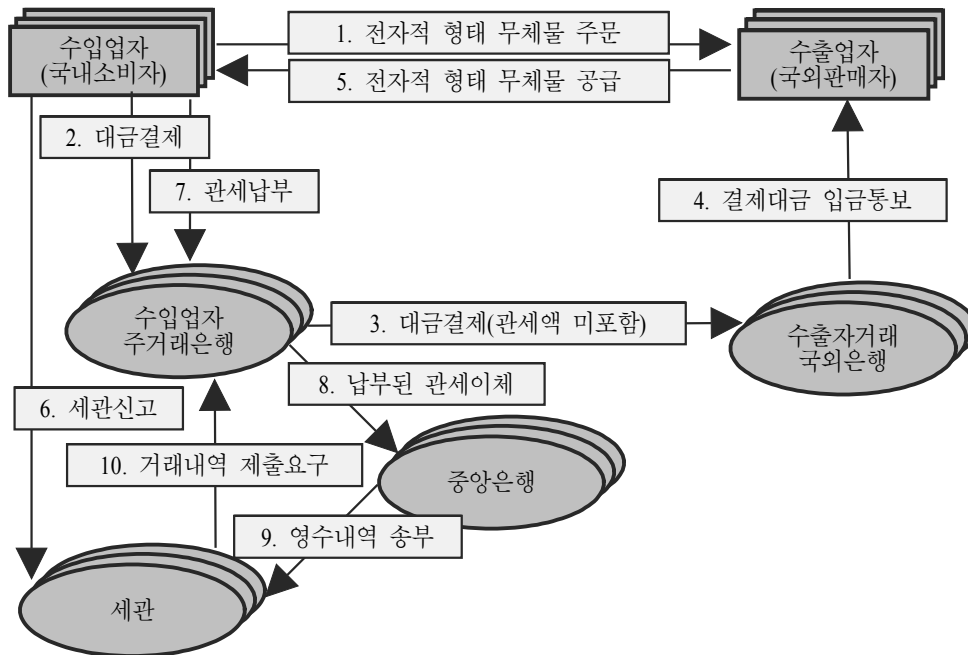


자료: 김세영·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p.174.

2)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은 수입자가 수입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하여 국내 세관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결정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의 모델을 말한다.

〈도표 6〉 수입자 자기신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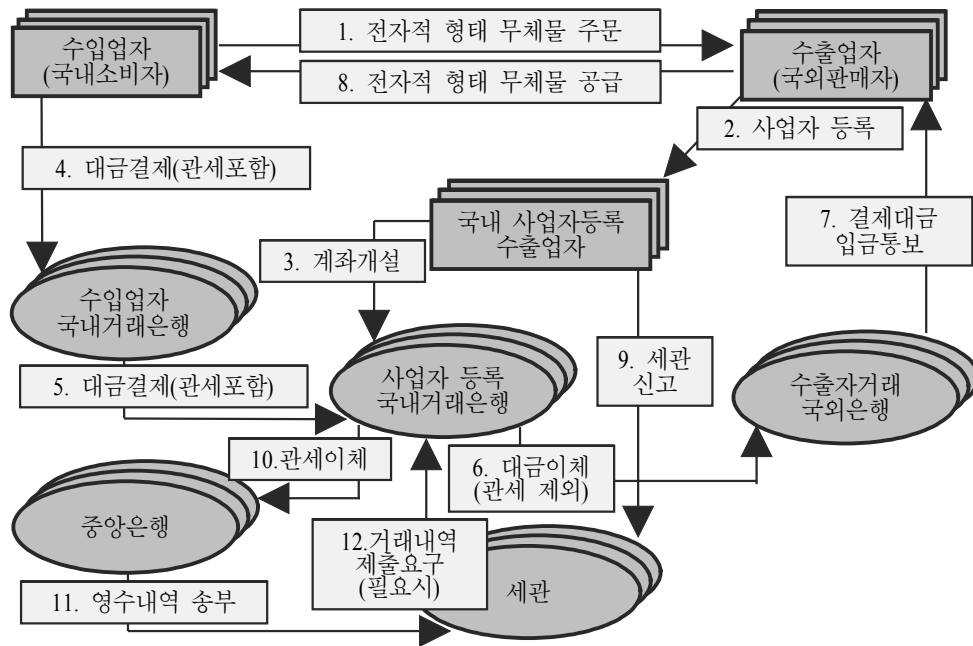
자료 : 각종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편집

3)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은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을 한 해당 사업자가 관세를 징수하여 세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은 수입자(국내소비자) 스스로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Global B2C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하나, Global B2C거래에만 등록의무를 지울 경우 수출업자(국외판매자)가 수입업자(국내소비자)의 납세의무조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i) EU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식과 같은 ID Number(등록번호)의 부여와 같은 방식, ii) 과세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digital 형식으로 정보화일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을 Global B2B거래에 적용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Global B2B거래에 자진신고 및 납부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 된다.

< 도표 7 >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



자료 : 각종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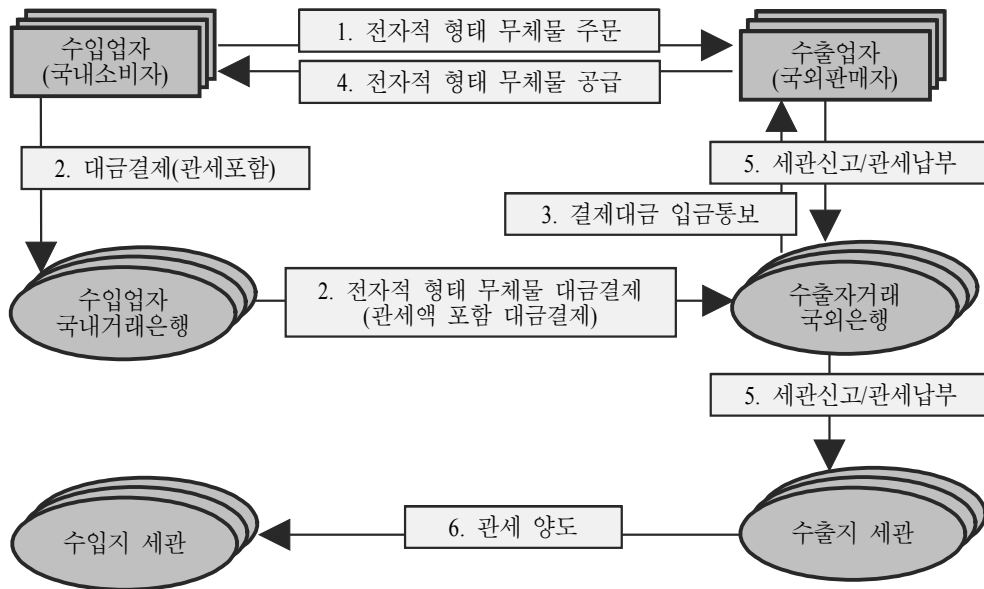
4)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은 수출업자(국외판매자)가 수입업자(국내소비자)에게서 해당 관세를 징수하여 수출국 세관에 납부하면, 수출국 세관은 납부 받은 관세를 소비자 국가의 세관에 양도하는 방식의 모델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은 국가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은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국가간 납세협력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도표 8>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



자료: 각종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편집

3. 탐색된 관세부과 모델의 평가

1) 신용카드사에 의한 원천징수 모델의 평가

신용카드사에 의한 원천 징수 모델은 세원포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흐름을 추적하여 관세근거를 포착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보다는 대금결제의 흐름에 의한 과세근거 포착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업자(국내소비자)의 거래대금 지불내역이 수입 지국의 신용카드회사나 은행 등의 지불기관에 보관되므로 지불기관의 협조를 얻으면 과세근거를 포착 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회사에 의한 원천 징수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관세 징수 납부를 위해서 관세의 면세대상인지, 관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정보는 수출업자(국외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의 청구를 받을 때 과세 및 면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래 유형에 관한 정보이기에 그 해결책으로서 될 것이다.

2)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 평가

Global B2B 거래에 유용한 모델로 평가받는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은 수입업자(국내소비자) 스스로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 대하여 해당관세를 세관에 자기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Global B2B 거래에 있어서 이미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해당 세관의 필요시 거래기업에 관하여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해당 세관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업자(국외판매자)로부터 당해 거래내역을 제출받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수입업자(국내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필요할 경우 수출업자(국외공급자)와 수입업자(국내소비자)간의 거래내역을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세금 포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의 장점으로서는 i) 납세협력의 비용 부문에 있어 수출업자에게 부담을 적게 준다는 점, ii)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에 따른 '수입업자 소재국(소비국)의 확인' '과세당국으로의 거래에 따른 등록' '거래에 관련한 조세 징수' 등과 같은 수출자로서의 관세관련 의무가 필요없게 된다는 점, iii) Global B2B 거래에 관련한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 모델을 이용할 경우 노출되는 문제로는 i) 수입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ii) Global B2B 거래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게 과세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담당토록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 iii) 실제 상황에 있어 세관이 소량 금액인 개인 소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과 조사비용의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의 평가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은 현재의 징수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징세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비용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보면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수출업자(국외판매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결점이 내재하고 있다. 이는 국외판매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flow를 강제적으로 진행시키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간의 국제적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외에도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은 수출업자(국외판매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또 다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국가와 무역거래를 하는 수출업자나 수출물량이 소수인 수출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Global B2C거래의 경우 i) 국가간에 온라인상의 거래규모 및 사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ii) 과세근거가 발생하는 시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래추적을 기초로 과세하기 보다 대금결제과정을 기초로 금융기관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4)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의 평가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은 수출업자(국외판매자)가 각각의 수입지 국가 과세당국에 등록신고를 하므로써 이후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수출업자(국외판매자)가 수입업자(국내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한 관세를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수출국 세관에 납부하면, 수출국 세관은 이를 해당 수입국 세관에 양도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여기에는 수입국가가 수출국가에 관세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협약 등과 같은 하는 국가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협약에 참여하는 수출국가에 관세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촉진책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i) 과세당국이 수입지 국가를 위해 관세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중되게 한다는 측면, ii) 이를 위해 신경 쓸 유인이 적으며, iii) 수출업자의 국적이 징세의무가 전혀 없는 비협정국에 위치할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 등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화 되어 물품이 국경을 넘어 전송되어지면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대금결제 가 있을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Global on-line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며, 현재의 주된 대금지급결제 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모델 설정을 통한 관세부과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세부과 모델로는 i) 신용카드사에 의한 원천 징수 모델, ii) 수입자 스스로의 자기신고 모델, iii) 국외사업자 등록 모델, iv) 공급지 과세후 양도 모델 등의 4가지이며, 각각의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을 보이는 특성은 i) 4가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 ii) 각각의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 등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세부과 모델에 관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효성과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시스템이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하의 관세제도와 균형을 이루고, 특히 형평성과 중

립성 및 투명성을 통하여 관세부과 절차가 예측가능하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곽근재,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경제적·규범적 의미”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 김광운·곽광규, “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세무학 연구」, 제20권 제3호, 2003.
- 김세영·박영기,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 김영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한국조세 연구원, 1999.12.
- 박문서,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 박형래·박영기, “전화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재화의 관세부과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10집 2호, 2005.
- 송선옥,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 신승남,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논란”, 「정보화로 가는 길」, 통권 34호,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 오웅탁·남구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후생효과”,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 윤창인,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38호, 법무부, 2001.
- 이제홍,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여부에 관한 논의”,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 이호건·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재정포럼」, 2004.

관세법

법인세법

Deng-Shing Huang, "Transport Cost and the Welfare Effect of Customs Un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Discussion Paper No. 9604. February 1996.

European Commission, “Global Information Networks : Ministerial Declaration,”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at Bonn, July, 1997.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http://www.whitehouse.gov>. 25 Nov. 1997).

World Trade Organizati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GC/W/78, 9 February, 1998.

World Trade Organization,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25 May,
1998.

World Trade Organiz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Geneva, 1998.

World Trade Organization, "Minutes of Meeting", WT/GC/W/M/57, 14 September, 1998.

World Trade Organization,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30 September, 1998.

World Trade Organization,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Geneva", 2001.

WT/MIN(05)/DEC 22 December 2005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http://www.kita.net/tri/month_viw.jsp?no=1701, 23 Oct., 2003.